

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

※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6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: 9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급아동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

변경 전 보호자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:	휴대전화:	아동과의 관계
	주소		

변경 후 보호자 (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:	휴대전화:	아동과의 관계
	주소		

입금계좌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------	------	-------	------

보호자 변경 사유	[] 변경 전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[] 변경 전 보호자가 교정시설,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·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[] 수급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[] 수급아동에 대해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[] 수급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[] 변경 전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, 보호처분,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[] 변경 전 보호자의 성폭·행실의 불량,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등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[] 그 밖에 변경 전 보호자의 사망, 실종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
-----------	--

통지방법	[] 서면 [] 전자우편 [] 문자 메시지 [] 기타(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아동수당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

-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보호자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유의사항

- 보호자 및 가구원의 변경에 따라 소득·재산조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- 「아동수당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
신청 신청 결과 통지	접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재

유의사항

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